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02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이건태·조계원·강준현

박지원 • 고민정 • 서영교

김승원 · 정태호 · 정성호

윤종군 • 양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처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인사위 원회의 추천으로부터 2개월 후이자 수사처검사 임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야 완료되었음. 임기연장이 불확실한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 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대통령 재가의 지연은 가뜩이나 인원 이 많지 않은 수사처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 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은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검사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인사위원회가 수사처검사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 ④ (생	제8조(수사처검사)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⑤ 대통령은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